

# 검 토 보 고 서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 조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충청북도지사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1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월 16일

3. 제안이유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에 있어, “다자녀가정”의 자녀수를 변경한 사용료 감면 및 재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과 이용객의 퇴거 조치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자녀수(3명 → 2명) 정의를 변경(안 제3조제11호)

나. 예약한 사람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정의된 “재난”으로 자연휴양림 이동·접근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안 제13조제5항)

다. 자연휴양림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도중 퇴실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 사용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안 제14조제5항)

라. “재난”으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 수 있게 규정(안 제15조)

마. 시설 사용료 항목 신설(안 별표1)

## 5. 검토내용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兒)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에 부합된 숙박시설 사용료 부과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

\* 본 조례의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 “3인 이상” → “2인 이상”으로 변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정의된 “재난”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납부한 시설 사용료 전액 환급과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객의 안전과 적정한 서비스 조치 및 운영을위해 필요함 .

○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규에 위반되거나 침해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예고(‘23. 12. 20.~‘24. 1. 9.)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 6.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 저출산 정책 및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자녀수 변경은 정당하며,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①“재난”에 따라 예약한 사람이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과 ②“재난”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객이 사용 도중 퇴거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전액을 환급하는 규정은 이용객의 안전과 공익적서비스 눈높이 맞춤형 차원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또한, 조령산자연휴양림 이용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재난”으로 인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사정(①, ②) 등에 따라 시설이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이행에 부합하는 타당한 사항임.
- 다만, 조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이용객들 눈높이에 맞는 숙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신설 숙박시설(트리하우스)의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은 적정한지 의문임.
  - 1) 우선, 시설사용료 선정에 트리하우스 시범운영 간의 설문조사(적정금액) 결과\*를 선정사유로 하는 것은 사실, 시설사용료\*\* 산정 측면에서 객관적이지 못하며 통계 표본(60여명) 이마저도 신뢰할 수준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 시설사용료 설문조사결과**

- **(1호: 62㎡, 2호: 51㎡) 총 조사자 64명 중 48명(75%) 응답**  
 ☞ 96,000 ~ 160,000원 선택(70.8%)
- **(3호: 31㎡) 총 조사자 64명 중 22명(34%) 응답**  
 ☞ 75,000 ~ 125,000원 선택(54.5%)

**\*\* [별표 1] : 시설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1일 요금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트리하우스	1동 / 4인 <b>【1호】</b> (31제곱미터)	96,000	160,000
	1동 / 4인 <b>【2호】</b> (51제곱미터)	96,000	160,000
	1동 / 4인 <b>【3호】</b> (31제곱미터)	48,000	80,000

2) 타휴양림\* 트리하우스 시설사용료 비교 또한 표본(2개소) 부족과 비교 분석 모델이 적정한 대상인지도 모호함.

\*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26㎡: 4인실, 단층 구조) : 비수기 70천원, 성수기 90천원만인  
 산자연휴양림(66㎡: 8인실, 2층 구조) : 비수기 75천원, 성수기 134천원

-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타자치단체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이용요금 통계 표본을 충분히 확보한 비교 분석 등으로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충북 레이크파크 부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